

적극행정 법규체계: 원리 조문에서 자치법규까지 5층

인사 · 징계 계열 — 장려 · 징계 면제

감사 계열 — 면책 · 사전컨설팅

규제 계열

① 기본 원리	「행정기본법」 제4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추진 ② 국가·지자체는 공무원이 적극 직무를 수행할 여건 조성 ③ 구체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→ 같은 법 시행령 제2조: 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·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으로 연결					
② 법률	「국가공무원법」 제50조의2 중앙 트랙의 위임 근거 (원문 풀더 미수록)	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 계획 수립·적극행정위원회·고의·중과실 없으면 징계의결 안 함	「감사원법」 제34조의3 감사원 감사: 징계·면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음	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2 자체감사: 같은 구조의 면책	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7조 규제개선 면책·포상·인사 우대	
③ 대통령령	「적극행정 운영규정」 대통령령 제35995호·중앙·인사혁신처	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대통령령 제35996호·지방·행정안전부	「공공감사법 시행령」 제13조의2 신청 일상감사·제13조의3·4 면책 기준·절차	「지자체 행정감사규정」 제18조 처분요구 → 적극행정은 제외 (지 15②)	제37조② (2026.5.12. 신설) 규제개혁위원회 심의·의결대로 처리하면 → 감사원법·공공감사법 면책 요건 충족 추정 → 징계·징계부가금 의결 안 함 단, 사적 이해관계 등 특별한 사유는 예외	
④ 집행 규칙·훈령	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 제3조의2 징계 면제	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제2조의2 징계 면제	「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」 소극행정 감경 제외 등	「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」 제33~45조 면책 기준·신청·직권 면책·위원회 건의		「지자체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규정」 국무총리훈령·시·도 → 중앙행정기관, 30일 내 통보
⑤ 자치법규	서울특별시 조례 2026.5.18. 개정·위원회·소송 지원		노원구 조례·규칙 조례 2020.5.21. 제정·소송지원 규칙 2026.4.23.			동대문구 조례 2025.2.27. 전부개정·인사위원회 심의

자료: 각 법령 현행 원문(국가법령정보센터, 2026.10.16. 확인) · 지 =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

운영규정의 제도: 추진 체계 · 장려 · 보호 · 국민 참여

1 추진 체계

기관장 책무 · 민 · 형사 보호조치
국 4 · 지 4

적극행정 책임관 · 전담부서 · 보호관
국 6 · 지 6

실행계획 · 추진사항 평가
국 7 · 지 7

적극행정 교육 연 1회 이상
국 8 · 지 8

법령 · 자치법규 정비와 해석
국 9~10 · 지 9

적극행정위원회 9~45명, 민간 1/2 이상
국 11~12 · 지 10~11

2 장려

우수공무원 매년 선발
국 14 · 지 13

인사상 우대 하나 이상 의무 —
특별승진 · 특별승급 · 성과급
최고등급 · 특별(포상)휴가 ·
근속승진 단축 등
국 15 · 지 14

우수기관 · 우수공무원 평가 · 포상 ·
포상금
국 7 · 지 7 · 13

파견 공무원도 선발 · 우대 가능
국 21 · 지 20

3 보호

사전컨설팅 — 감사기구에 처리
방향 의견 요청
국 5 · 지 5

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의견 요청
국 13① · 지 12①

재난 · 안전 업무 사후 추인
국 13② · 지 12②

감사 면책 — 징계 · 문책 요구 안 함
국 16 · 지 15

징계의결등 면제
국 17 · 지 16

소명 · 수사 · 소송 지원, 수사기관
의견 제출
국 18 · 지 17

4 국민 참여 · 통제

적극행정국민신청 — 거부 통지
받은 국민이 국민참여포털로 신청
국 18의2 · 지 17의2

소극행정 신고 — 권익위 신고센터
국 18의3 · 지 17의3

소극행정 징계의결등 요구
국 19 · 지 18

소극행정은 징계 감경 제외
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② · 지방 징계규칙
제5조②

공무원 보호 장치: 업무 전부터 소송까지 4단계 안전망



자료: 지 =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조문(국가 운영규정은 제13조 · 제16조~제18조가 대응) · 각 법령 원문

중앙 · 지방 쌍둥이 구조, 최근 개정은 '보호' 중심

구분	중앙 — 적극행정 운영규정	지방 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
근거 법률	「국가공무원법」 제50조의2	「지방공무원법」 제75조의2
소관	인사혁신처	행정안전부 · 교육부
적극행정위원회	기관별 설치, 위원장: 차관급 또는 민간위원	단체장 소속, 위원장: 부단체장 등 또는 민간위원 · 인사위원회 대행 가능
사전컨설팅 상향	자체 감사기구 → 감사원	자체 감사기구 → 시 · 도 감사기구 → 중앙 감사기구 · 감사원
평가	인사처 평가 → 국무회의 보고	교육부 · 행정안전부 평가 · 포상
감사 면책 특례	—	행정감사 처분요구 면책 · 추정 요건 추가 (제15조②③)

최근 개정 흐름

- 2025.11.11. · 12.30. 두 운영규정 개정**
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· 민 · 형사 보호조치 책무 · 감사기구 의견 10일 내 회신 · 재난 · 안전 사후 추인 · 수사기관 의견 제출 · 형사소송 무죄 확정 후 비용 지원(퇴직자 포함)
- 2026.1.1. 지방 우수공무원 매년 선발**
2026년 선발분부터 적용 (지방 운영규정 부칙 제3조)
- 2026.5.12.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37조②**
규제개혁위원회 의결대로 처리 → 면책 추정 · 징계의결 안 함
- 2026.5.18. 서울특별시 조례 개정**
사후 추인 · 수사기관 의견 제출 심의, 지원 세부는 규칙 위임

자료: 두 운영규정(제35995호 · 제35996호) 조문 · 개정 연혁, 「행정규제기본법」(제21643호) 부칙, 서울특별시 조례(제10122호)

서울시 · 자치구 자치법규: 반영 정도와 점검 포인트

서울특별시	노원구	동대문구
조례 제10122호 · 2026.5.18. 개정	조례 제1430호 · 2020.5.21. 제정 / 규칙 제984호 · 2026.4.23. 제정	조례 제1721호 · 2025.2.27. 전부개정
심의 기구 서울특별시 적극행정위원회 9~15명, 위원장 행정1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주요 내용 실행계획 · 포상 · 소송 지원(제7조의2) · 사후 추인 · 의견 제출 심의 반영 정도 2025.12.30. 운영규정 개정 사항 반영, 지원 세부는 규칙으로 위임	심의 기구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수행(조례 제3조) 주요 내용 조례: 실행계획 매년 수립 · 점검(3개 조) / 규칙: 소명 · 수사 · 소송 지원 절차와 비용 검토 사항 조례가 인용한 '영 제10조' 각 호는 2021.7.27. 전문개정 전 체계 · 전문가 의견: 영 '들어야 한다', 조례 '들을 수 있다'	심의 기구 인사위원회가 심의, 사전컨설팅 자문 · 면책 건의 등 8개 사항(제7조) 주요 내용 책무 · 실행계획 · 교육 연 1회 · 지원(영 제15조~제17조) · 포상 검토 사항 면책 건의 인용 '영 제15조제6항' → 개정으로 제15조제7항 · 사후 추인(영 제12조②) 심의 사항 추가
자치단체 점검 포인트 — 현행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기준 ☐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(제6조②) ☐ 우수공무원 매년 선발 (제13조①) ☐ 사후 추인 심의 근거 (제12조②) ☐ 교육 연 1회 이상 (제8조①) ☐ 지원 세부 규칙 제정 (제17조⑤) ☐ 조례 인용 조문 현행화		

자료: 서울특별시 조례(제10122호), 노원구 조례(제1430호) · 규칙(제984호), 동대문구 조례(제1721호) 원문